



내부고발제도

1. 목적

- 1) 윤리강령 위반 행위의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
- 2) 조직내 위규행위 및 부조리에 대한 점검 및 조치

2. 개요

- 1) “내부고발제/신문고제도 등” 란 임직원이 제반 법규 및 윤리강령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, 이해관계자 또는 제3자가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제보하는 것
- 2) 본 제도의 운영 및 관리는 “총괄책임자”가 주관하는 것으로 함.

3. 신고대상

- 1)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, 제반법규 및 ‘윤리강령’ 위반사항
 -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
 -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
 -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
- 2)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
- 3)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
- 4)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및 위법 부당한 행위의 가담을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대우
- 5) 성희롱, 성차별 행위
- 6) 정당한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대우
- 7) 기타 위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신고자 포상

- 1) 내부고발로 인하여 손실발생 방지 등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함.
- 2) 포상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
 -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제보의 정확성
 - 제공한 고발정보가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



- 고발자가 불법행위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의 여부
- 손실발생 방지 등에 기여한 정도 등

5. 신고자의 보호

비윤리행위 신고자는 최고경영자의 지시에 의해 보호되며 아래사항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

- 1)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에 대한 비밀보호
- 2) 신고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 관련자료의 보호

6. 비윤리행위 신고 및 절차

- 1) 신고처: 총괄책임자
- 2) 신고방법: 이메일, 전화, 팩스, 방문, 기타 등
 - 전화/팩스 제보: TEL) 02-2654-8801 FAX) 02-2654-6729
 - 이메일 신고: odkwon@nesura.co.kr
- 3) 신고요령:
 -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을 적시
 - 신고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록
 -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.

